|  |  |  |
| --- | --- | --- |
| **공해배출 신고책정 및 공해배출 요금징수 종합심사, 평가 업무 보강과**  **관련한 통지**  環監發[2011] 제1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단 환경 감찰국(총대):  공해배출기업, 특히는 국가 중점 감시통제기업의 환경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여 주요공해물의 배출을 감소하고 공해배출 신고의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응용을 추진하며 공해배출요금의 합법적이고 전면적인 전액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공해배출 신고책정 및 공해배출 요금징수 종합심사, 평가(이하 “종합 심사, 평가”라 함)업무 보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시효 성을 강화하고 경제정세 분석 등 거시적 정책제정에 데이터지원을 제공한다.  공해배출 신고제도와 공해배출 요금제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환경관리제도로서 이에 대한 종합심사, 평가업무는 경제정세 분석 및 거시적 정책제정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 지원일 뿐 아니라 공해배출 신고와 공해배출 요금 관리를 위한 주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정확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심사, 평가업무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공해배출 신고 및 공해배출 요금 신고제도에 따르면 공해배출 분기신고와 공해배출 요금 분기보고는 분기 종료 후 30일 내에 보고하고 공해배출 신고 연차보고는 차기연도 3월 1일 전에, 공해배출 요금징수 연차보고는 차기연도 4월 15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 지방들에서 공해배출 신고와 공해배출 데이터분석 연차보고, 분기보고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아 전반 데이터분석과 응용의 시효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 각지 환경감찰기구들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매년 초에 정확히 배치함으로써 분기보고와 연차보고의 시한성을 준수하여 환경관리와 거시적 경제현황 분석에 데이터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데이터를 질적으로 보장하고 “급별 종합심사”제도를 한층 더 심화해야 한다.  각 지방들에서는 다각적 종합심사 제도와 다각적 데이터심사 제도를 수립하고 공해배출기업 보고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보강하여 종합데이터를 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급별 종합심사”제도를 한층 더 심화하여 관할구역 내의 신고데이터 및 요금데이터는 반드시 국가의 통일적 종합심사 전에 급별 종합심사를 필하고 공해배출 요금관리시스템 데이터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질을 자세히 검사함으로써 데이터의 논리상의 오류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각 성급 환경감찰기구에서는 종합심사회의 등 방법으로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피드백 하고 데이터를 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3. 중점을 정하여 2010년도 종합심사, 평가 업무를 잘해야 한다.  데이터 교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비추어 2010년도 종합심사, 평가업무는 기존의 토대위에서 하기 상황들을 중점으로 평가해야 한다.  (1) 국가 중점 감독통제기업의 공해배출요금 징수상황. 2010년도에 환경부에서 중점업무로 설정한, 국가 중점 감독통제기업의 공해배출요금 징수상황은 2010년 2/4분기부터 환경부 사이트에서 사회에 공고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2010년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국가 중점 감독통제기업의 공해배출요금 징수상황을 이번의 평가중점으로 한다.  (2) 상장기업의 환경평가에서 공해배출요금 징수상황. 상장기업의 환경검사에서는 공업오염물 예방과 정비를 중점으로 하고 공해배출요금 징수상황은 상장기업 환경검사내용의 하나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지 못한 관계로 공해배출요금 징수상황 검사과정에 전화로 인출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상장기업의 환경검사진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응용을 한층 더 추진하고 작업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도 상장기겁의 환경검사상황이 기업의 데이터완벽성과 관련될 경우에는 점수를 공제해야 한다.  (3) 공해배출 신고의 완벽성. 공해배출 신고등록제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모든 기업이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 농도를 환경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게 해야 한다. 배출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 농도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시 신고 등록해야 한다. 특히 폐수를 도시 폐수처리장에 배출하고 정책에 따라 폐수 공해배출요금을 면제하는 기업이라 해도 제때에 신고하여 공해배출 법정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10년도 각 관할구역 내 폐수처리장의 기업수와 모든 폐수기업 수의 비율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해야 한다.  4. 우렬 상벌을 통해 종합심사, 평가규칙을 조정해야 한다.  종합심사, 평가활동을 6년간 진행하면서 공해배출 신고와 공해배출요금 징수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열성을 극대한 동원했고 종합심사, 평가활동이 공해배출 신고, 공해배출요금 징수의 효과적인 동력의 하나로 정착했다. 공해배출 신고와 공해배출요금 징수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보강하기 위해 우렬 상벌을 2010년도 종합심사, 평가규칙에서 채점 90점 이상(90점 포함)은 1등 상, 채점 80점 이상(80점 포함)에서 90점까지는 2등 상, 채점 70점 이상(70점 포함)에서 80점까지는 3등 상으로 조정한다. 구체방법은 별첨을 참조한다.  5. 안전하게 추진하여 차기연도의 종합심사, 평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의 업무중점과 환경감찰활동 요점에 근거하고 공해배출 신고 및 공해배출요금 징수실정에 결부시켜 차기연도에는 하기 상황들을 평가해야 한다.  (1) 국가에서 통제하는 중점 오염원 기본서류 데이터관리플랫폼 구축상황. 각급 환경감찰기구에서는 전에 하달한《국가에서 통제하는 중점 오염원 기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소프트웨어에 근거하고 기존의 전문 신고업무성과에 결부시켜 국가에서 통제하는 중점 오염원 기본서류 데이터 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국가에서 중점으로 통제하는 기업의 공해배출 데이터의 신고, 책정에서는 오염원 전면조사 성과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주요오염물 배출총량 감소상황을 검사하며 공해배출 데이터를 상호 검증하고 분석, 대비하여 가급적으로 정확히 책정해야 한다.  (2) 오염원 자동컨트롤 데이터를 이용한 공해배출요금 징수상황.《국가에서 통제하는 중점 오염원 자동 감독통제능력 건설 프로젝트 2010여도 특별검사결과 및 차기 업무 배치와 관련한 통지》(環辦[2011] 제 303호)와《오염원 자동컨트롤 데이터를 이용한 공해배출요금 책정, 징수에 대한 통지》(環辦[2011] 제 53호)의 요구에 따라 2011년 2/4분기부터 유효 심사된 오염원 자동컨트롤 데이터로 책정하여 징수한 30만 KW 이상의 발전소 이산화유황 공해배출 상황을 연도평가의 의거로 한다.  (3) 중금속 오염기업 공해배출 신고의 규범화 상황. 국가에서 진행하는 중금속 오염 예방정비 활동에 배합하여 2011년도부터 연, 수은, 카드뮴, 크롬, 그리고 비소 등 오염물의 중 유색금속 광산(반생광산 포함)의 채광업과 선광업, 중 유색금속 제련업, 연을 함유한 축전지 생산업, 피혁 및 그 제품 제조업, 화학원료와 화학제품 제조업 등 기업에서는 반드시《오염물 배출 신고등록 통계표(시범)》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며 간이표 작성을 불허한다.  (4) 공해배출 신고정무의 공개. 2011년도부터 공해배출 신고데이터의 응용상황을 공해배출 신고의 책정, 평가 내용의 하나로 한다. 중점 공해배출기업에 편리하여 개방된 인터넷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해배출 신고의 책정정무 공개에서 성과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평가 시에 점수를 가해 준다.  (5) 오염원 전면조사와 데이터의 다이내믹 갱신을 대조하고 신고의 면을 넓혀 누락을 근절하며 공해배출과 오염원 전면조사 데이터 대조확인 상황을 점차 종합심사, 평가의 내용으로 하게 될 것이다.  2010년도 종합심사, 평가회의는 잠시 2011년 5월말로 정하고 구체 일시와 장소는 다시 통지한다.  별첨:  1. 공해배출 신고 책정 및 공해배출요금 징수 종합심사 구체요구  2. 공해배출 신고 책정업무보고 종합감사 채점방법(생략)  3. 공해배출요금 징수 업무보고 종합감사 채점방법(생략)  환경감찰국  2011년 5월 10일  별첨 1  **공해배출 신고 책정 및 공해배출요금**  **징수 종합심사 구체적 요구**  1. 목표를 명확히 하고 중점을 내세워 제때에 공해배출 신고 및 공해배출요금 신고서의 하달, 확인, 책정, 종합 등 작업을 잘 해야 한다.  각급 환경감찰기구에서는《공해배출요금 징수, 사용 관리조례》(국무원 령 제369호),《공해배출요금 책정, 징수 업무와 관련한 통지》(環發[2003] 제64호),《공해배출요금 책정, 징수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環發[2003] 제187호) 등 공문에 따라 본 관할지역 각종 공해배출기업에게《오염물배출 신고, 등록, 통계표(시범)》과《오염물배출 신고, 등록, 통계 간이표(시범)》을 작성하게 하고 대, 중 규모의 공해배출기업에 대한 요구를 엄격히 하며 소규모 공해배출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도를 제공하여 관할지역 내의 모든 공해배출기업이 제때에 신고하게 해야 한다. 정책에 따라 폐수를 도시 폐수처리장에 배출하고 공해배출요금을 면제받는 단위에게도 공해배출 법정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중금속 배출기업 등은 반드시《오염물배출 신고, 등록, 통계표(시범)》을 작성해야지 간이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각 지방들에서는 제1차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 기업명부, 통계연감, 공상등록 등 데이터와 대조하여 전면조사 오염물배출기업 명부에 있는 현유기업은 모두 법에 따라 공해배출신고를 하게하고 공해배출기업의 수를 명확히 하여 누락이 없게 해야 한다. 그리고 중점업계, 중점 강하천유역, 중점지역과 중점 오염원의 공해배출 신고데이터를 즉시 확인 책정하여 월별, 분기별로 종합하고 중점오염원에 대한 다이내믹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각 지방들에서는 정확히 책정한 국가 중점 통제기업의 공해배출 데이터를 주요 오염물의 총량 감소, 공업오염원 전면조사, 환경통계, 환경에 대한 법집행, 일상 감독관리, 환경 행정관리, 응급조치 등에 이용함으로써 신고책정 데이터의 이용수준과 그 강도를 계속 제고해야 한다.  2. 제도를 건전히 하고 엄격히 심사하여 국가의 중점 감독통제기업의 공해배출 신고와 공해배출요금 징수 데이터를 빠짐없이, 즉시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 중점 감독통제기업의 공해배출신고와 공해배출요금 징수상황은 종합심사, 평가의 요점이다. 왕년에는 종합심사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보고하지 않고 보고 시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으며 공해배출 신고 책정기업의 수가 공해배출요금 징수기업의 수보다 적고 일반적으로 수량의 오류와 논리관계의 오류 등이 존재하였는데 각지에서 이에 깊은 중시를 돌려야 한다.  환경부가《〈2011년 국가 중점 모니터링 기업명부〉발부와 관련한 통지》(環辦[2011] 제36호)에서 국가 중점 모니터링기업으로 확인한, 4,851개 폐수 배출기업과 4,422개의 폐기 배출기업에서는 반드시《오염물배출 신고, 등록, 통계표(시범)》을 작성해야 하며, 2,864개 도시 생활폐수 처리장에서는 《폐수 처리장 오염물배출 신고 등록, 통계표(시범)》을 작성해야 한다. 상술한 12,137개 2010년도 국가 중점 모니터링기업의 공해배출 신고데이터는 반드시《공해배출요금 징수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한다.  《오염물배출신고 등록, 통계표(시범)》작성 시에는 정보의 완벽성, 정확성, 평형성을 보장하고 리스트 1-1의 단위 기본정보의 경도, 위도 등 45개 지표, 리스트 1-7과 리스트 1-8의 주요오염물 배출 수량 등 데이터는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며 빼거나 누락되어서는 아니 된다. 폐수 처리장에서 작성하는《폐수 처리장 오염물배출 신고 등록, 통계표(시범)》리스트 1-1의 1, 2, 3, 13, 14, 16, 29 등 항의 내용은 반드시 진지하게 작성하여야 하지 빼거나 누락되어서는 아니 된다. 데이터 입력은 규범에 맞고 정밀해야 하며 숫자의 오류나 논리적 오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환경관리와 법 집행의 수요를 위해 지표종목, 이를테면 업계유형, 오염물배출 수역의 명칭 입력 시에는 될수록 세분해야 하며 업계 유형선택과 당해 오염물 배출단위와 대응하는 업계의 세분명칭을 선택하고 배출수역의 명칭은 오염물을 직접 받아드리는 강하천의 명칭을 선택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에 당해 강하천의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로 첨가할 수 있다. 데이터 입력과 종합 작업을 필한 후에는 국가에서 통제하는 검정수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검증하고 검정결과에 의거하여 데이터를 수정해야 한다. 국가에서 통제하는 검증을 하지 않은 데이터는 직전상급 감찰기구에 보고하지 못한다.  3. 책임적으로 엄격히 문책하며 법률과 행정수단을 충분히 이용하여 공해배출 신고 및 공해배출요금 징수업무를 추진한다.  각급 환경감찰기구에서는 종합심사 시에 논리적 교열을 거친 기초에서 왕년의 공해배출 심사 책정 데이터, 공해배출요금 징수데이터와 당지 통계부서, 수자원관리부서, 에너지부서 등의 데이터에 결부시켜 데이터를 일일이 비교하고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부로 다시 보고하게 하거나 보완하게 해야 한다. 보고를 거절하거나 거짓보고를 하는 공해배출단위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하는 동시에 기한부로 공해배출 신고수속을 보완하게 해야 한다.  각급 환경감찰기구에서는 분기 및 연도 데이터베이스와《공해배출요금 징수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한 종합리스트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연도 데이터베이스와 분기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다. 보고 시에는 종합리스트와 데이터베이스의 일치성을 보장하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단위나 개인의 수정이나 조정을 엄금하며 종합리스트와 데이터베이스의 불일치함을 발견한 경우 정상이 경미한 상황에는 기한부로 시정하게 하고 정상이 심각한 상황에는 당해 년도의 종합심사, 평가자격을 취소하고 통보하여 비판한다.  공해배출요금 검사보고서에는 검사상황 설명, 검사데이터 분석, 검사건의, 검사 대상기업의 명세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4. 사전 종합심사와 현지 채점을 통하여 데이터를 질적으로 보장한다.  종합심사, 평가과정에 심사 평가 규칙을 해마다 다이내믹 조정함으로써 심사 평가를 통해 지방들에서 제때에 공해배출요금을 신고하게 하고 공해배출요금 징수를 규범화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심사방법에서도 “사전 심사, 현지 채점” 방식을 취하여 각 성의 신고, 요금징수 데이터의 교열, 확인, 채점 작업을 모두 종합심사회의 전에 필하게 한다. 종합심사 시에 각 성에서는 본성의 득점을 확인하고 타성의 득점을 감독하기만 하면 된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득점을 수정할 수 있다. 확인이 끝나면 확인된 결과에 근거하여 최종으로 통일 채점한다. |  | **关于加强排污申报核定与**  **排污费征收汇审考评工作的**  **通知**  环监发[2011]11号  各省、自治区、直辖市、新疆生产建设兵团环境监察局（总队）：  　　为强化对排污企业尤其是国家重点监控企业的环境监管，促进主要污染物总量减排，推动排污申报基础数据库的建设和应用，促进排污费依法、全面、足额征收，现就进一步加强排污申报核定与排污费征收汇审考评工作（以下简称“汇审考评”）通知如下：  　　一、强化时效性，为经济形势分析等宏观决策提供数据支撑  　　排污申报和排污收费制度是我国重要的两项环境管理制度，其汇审考评工作是经济形势分析与宏观决策的重要数据支撑，也是加强排污申报和排污收费管理工作的主要措施。及时准确报送数据是汇审考评工作的基础。按照排污申报和排污收费汇审报告制度，排污申报和排污收费季报在季度终了后30日内报送，排污申报年报在第二年的3月1日前、排污收费年报在第二年的4月15日前报送。但是仍有一些地方不能按时报送排污申报和排污收费数据分析年报、季报，已经严重影响了总体数据分析和应用的时效性。各地环境监察机构务必引起高度重视，每年度提前进行部署，确保季报、年报按规定时间报送，及时为环境管理、宏观经济形势分析等提供数据支撑。  　　二、把好数据质量关，进一步深化“分级汇审”制度  　　各地应当建立多方汇审、联合把关的数据汇审制度，加强对排污企业填报数据质量的核查，确保汇总数据的质量。应进一步深化“分级汇审”制度，对辖区内的申报数据及收费数据应在国家统一汇审之前分级完成汇审，利用排污费征收管理系统数据检查工具详细检查数据质量，自行解决数据逻辑不符等问题。各省级环境监察机构应当通过召开汇审会等方式集中解决发现的问题并予以及时反馈，提高数据质量。  　　三、突出重点，做好2010年度汇审考评工作  　　针对数据校验中发现的问题，2010年度汇审考评工作在原有考评内容的基础上，还将对以下情况予以重点考评：  　　1、国家重点监控企业排污费征收情况。根据2010年环境保护部重点工作安排，国家重点监控企业排污费征收情况应当于2010年第二季度开始在环保部网站上向社会进行公告。因此，2010年第二季度至第四季度国家重点监控企业排污费征收情况将作为本次考评重点。  　　2、上市企业环保核查中排污费征收情况。上市企业环保核查是工业污染防治工作的重要抓手，而排污费征收情况是上市企业环保核查的内容之一。但是一些地方数据库不完整，导致核查排污费征收情况时还需电话调度，甚至影响了上市企业环保核查进度。为进一步推进数据库应用，提高工作效率，对2010年度上市企业环保核查情况涉及企业数据不完整的将予以扣分。  　　3、排污申报全面性情况。应充分发挥排污申报登记制度的作用，要求所有企业向环保部门申报登记在正常作业条件下排放污染物的种类、数量和浓度。排放污染物的种类、数量和浓度有重大改变的，也应当及时申报登记。特别是对于排入城镇污水处理厂、按政策免征污水排污费的排污企业，也必须按时申报，依法履行排污申报的法定义务。2010年度各辖区内排向污水处理厂的企业户数与所有排污企业户数的比率将作为重要考核指标。  　　四、奖优罚劣，对汇审考评规则作出调整  　　汇审考评工作开展6年来，极大调动了从事排污申报、排污收费工作人员的积极性，汇审考评已经成为推动排污申报、排污收费工作的有效抓手之一。为进一步推动排污申报和排污收费管理工作，奖优罚劣，2010年度汇审考评规则调整为：折算分90分（含）以上的为一等奖，折算分80分（含）至90分的为二等奖，折算分70分（含）至80分的为三等奖。具体见附件。  　　五、稳步推进，为下一年度汇审考评奠定基础  　　根据环保部工作重点及环境监察工作要点，结合排污申报和排污费征收实际情况，下一年度拟对下列情况进行考核：  　　1、国控重点污染源基础档案数据管理平台建设情况。各级环境监察机构应借助已下发的《国控重点污染源基础数据库系统》软件，结合已有的专项申报工作成果，建立和完善国控重点污染源基础档案数据管理平台。对国家重点监控企业排污数据的申报核定工作应充分吸收污染源普查成果，紧密结合主要污染物总量减排核查，开展排污数据的相互验证和分析比对，力求准确核定。  　　2、应用污染源自动监控数据征收排污费情况。根据《关于通报国控重点污染源自动监控能力建设项目2010年专项检查结果及下一步工作部署的通知》（环办函〔2011〕303号）和《关于应用污染源自动监控数据核定征收排污费有关工作的通知》（环办〔2011〕53号）的要求，自2011年第二季度起，经有效性审核的污染源自动监控数据核定征收30万千瓦以上电厂二氧化硫排污费情况，将作为年度考核依据。  　　3、重金属污染企业排污申报规范情况。为配合国家开展的重金属污染防治工作，自2011年度起，对排放铅、汞、镉、铬和类金属砷等污染物的重有色金属矿（含伴生矿）采选业、重有色金属冶炼业、含铅蓄电池业、皮革及其制品业、化学原料及化学制品制造业等企业必须填报《排放污染物申报登记统计表（试行）》，不允许填报简表。  　　4、积极推动排污申报政务公开。从2011年度起，排污申报数据的应用情况将作为排污申报核定考核内容之一。对于向重点排污企业提供便捷和开放的网上申报服务方式，推行排污申报核定工作政务公开并取得成果的地区，考评时将作为加分项。  　　5、应当积极与污染源普查以及动态更新数据比对，扩大申报面，避免遗漏，排污申报与污染源普查数据的核对情况今后将逐步纳入汇审考评。  　　2010年度汇审考评会议初步安排在2011年5月底进行，具体时间、地点另行通知。  附件：  1、排污申报核定与排污费征收汇审具体要求  　　2、排污申报核定工作报告汇审计分办法（略）  　　3、排污费征收工作报告汇审计分办法（略）  环境监察局  　　 二○一一年五月十日  附件一：  **排污申报核定与排污费征收汇审**  **具体要求**  　　一、明确目标、突出重点，按时保质完成排污申报和排污费征收报表的下发、审核、核定、汇总工作  　　各级环境监察机构应当按照《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国务院令第369号）、《关于排污费征收核定有关工作的通知》（环发〔2003〕64号）和《关于排污费征收核定有关问题的通知》（环发〔2003〕187号）等文件，要求本辖区内排污企业根据不同类型分别填报《排放污染物申报登记统计表（试行）》和《排放污染物申报登记统计简表（试行）》，对大中型排污企业应当严格要求，对小型三产等排污企业应当予以必要的指导，实现本辖区内所有排污企业的按时申报，对因按政策免征污水排污费的排入城镇污水处理厂的排污单位，要明确要求其履行排污申报的法定义务；对重金属排放企业等必须填报《排放污染物申报登记统计表（试行）》，不得填报简表。  　　各地应当对照当地第一次全国污染源普查企业名单、统计年鉴、工商注册登记等数据进行排查，凡现有在普查名单中有污染物排放的企业都必须依法如实进行排污申报，搞清排污单位数量，做到应报尽报，在此基础上做到对重点行业、重点流（区）域和重点污染源排污申报数据的及时审核与核定，按月、季度汇总，实现重点污染源动态管理。  　　各地应把准确核定的国家重点监控企业排污数据情况，用于主要污染物总量减排、工业污染源普查、环境统计、环境专项执法、日常监管、环境行政管理和应急处置等工作中，不断提高排污申报核定数据的应用水平和力度。  　　二、健全制度、严格审核，做好国家重点监控企业排污申报和排污费征收数据的全面、及时、准确上报  　　国家重点监控企业排污申报和排污费征收情况是汇审考评要点。针对往年汇审中存在的不按时上报数据、不报数据库、不使用软件生成上报报表、排污申报核定户数小于排污收费户数、以及一般的数量级错误和逻辑关系错误等问题，各地必须高度重视。  　　环保部《关于印发<2011年国家重点监控企业名单>的通知》（环办〔2011〕36号）确定的4851家废水、4422家废气国家重点监控企业必须填报《排放污染物申报登记统计表（试 行）》，2864家城镇生活污水处理厂必须填报《污水处理厂（场）排放污染物申报登记统计表（试行）》。上述 12137 家2010年国家重点监控企业的排污申报数据必须录入《排污费征收管理系统》软件。  　　填报《排放污染物申报登记统计表（试行）》时应当做到信息完整、准确和平衡，表1-1单位基本信息中的中心经纬度等45项指标、表1-7和1-8的主要污染物排放量等数据项必须全部录入，不允许缺报、漏报；所有污水处理厂填报《污水处理厂（场）排放污染物申报登记统计表（试行）》，其中表1-1的第1、2、3、13、14、16、 29等项内容必须认真填写、不能缺漏。在数据录入过程中，要求规范细致，杜绝出现数量级错误和逻辑关系错误。  　　为满足环境管理和执法需要，录入某些指标项如行业类别、排入水体名称时应尽可能细化，行业类别选择与该排污单位相对应的行业细类名称、排入水体名称须选择直接接纳该排污单位废水的河流名称，如在软件中没有该河流，可自行增加。在数据录入及汇总后应该自行利用国控校验工具进行数据校验，并根据校验结果组织修改完善数据。未通过国控数据校验的不得向上一级环境监察机构报送。  　　三、认真负责、严格问责，充分运用法律、行政手段推进排污申报和排污费征收工作  　　各级环境监察机构在进行汇审时，应在逻辑校验基础上，结合往年排污申报核定数据、排污费征收数据和当地统计、水务、能源等部门数据，对数据进行逐项比较，凡不符合要求的，应责成其限期重报或补报；对拒报或谎报的排污单位要依照有关法律法规进行处罚，并责成其限期补办排污申报手续。  　　各级环境监察机构应当按时上报季度和年度数据库并使用《排污费征收管理系统》软件生成上报汇总表。上报的数据库必须包括年度和季度的数据库。上报时应保证汇总表与数据库一致，严禁任何单位和个人擅自修改和调整数据，凡发现汇总表与数据库不一致或书面报表与电子报表不一致的，情节轻微的，限期改正，情节严重的，取消当年汇审考评资格并进行通报批评。  　　排污费稽查报告应当包括稽查情况说明、稽查数据分析、稽查建议、稽查企业明细等具体内容。  　　四、提前汇审、现场评分，进一步强化数据质量  　　在汇审考评过程中，汇审考评规则每年动态调整，以达到通过汇审考评引导地方按时保质申报、规范排污费征收的目的。在评审方式上，采用“提前评审、现场评分”的方式，把对各省申报、收费数据的校验、核对、打分评比工作全部安排在汇审会议之前。现场汇审时，各省只需核对本省及监督他省得分情况即可。在有确切依据的情况下，可以修订得分。核对结束后，根据核对结果进行最后的统一打分。 |